

배임증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79. 6. 12. 선고79도 608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4. 4. 30. 선고 2003나11891 판결]

정 준 길*

목 차

I. 서론	4.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0. 8. 26, 선고80도19 판결)
II. 대상판결의 분석	5. 평석
1. 사실관계	6. 관련문제 - 부정한 청탁의 판단 기준 -
2. 원심의 판단	III. 결론
3. 대법원의 판단	

I. 서론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은 제357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임증재죄는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② 그 임무

*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에 관하여 ③ 부정한 청탁을 하고 ④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와 관련한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배임수재죄와 비교할 때 별다른 법률적인 이견이 없으나, 대상 판결에서는 부정한 청탁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나, 수재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될지라도 증재자의 입장에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하에서는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의 판단 기준에 대한 기존의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Ⅱ. 대상판결의 분석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연무 제1단위 농업협동조합직에 재임하던 1973. 8. 하순일 자불상경 충남 논산군 논산읍 반월동 41의 26 소재상 피고인 권의직의 집에서 당시 논산농지개량조합장직에 있는 동인에게 위 농지개량조합에서 그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수세 등으로 장차 징수하게 될 금 50,000,000원을 자기가 조합장으로 있는 위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장기예치 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동월 30. 10:00경 동소에서 그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금 500,000원을 위 권의직에게 공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배임증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

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원심은 동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권의직에게 위와 같은 예금유치를 위한 청탁을 하였더라도 이를 가리켜 그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가사 동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위 권의직에게 위와 같이 재물을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증재죄는 성립할 수 없고 달리 동 피고인을 배임증재죄로 처단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설시를 하고 결국 동 피고인에 대한 본건 피고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동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심의 설시는 본건 기록과 같이 당심이 심리하여 본 결과에 비추어 넉넉히 수긍이 되고 달리 동 피고인을 본건 배임증재죄로 단죄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견해를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에 귀착하고 만다.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법 제357조 제2항에 규정한 재물 또는 이익의 공여자에게 부정한 것이 없는 한 배임증재죄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이는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 보아 부정한 것인 여부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협동조합 단위조합장이던 피고인이 조합을 위하여 예금유치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업무에 속하고 그를 위하여

청탁을 하는 것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없는 바, 형법 제357조 제2항에 규정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것이 없는 한 배임증재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 이는 그것을 받는 사람으로 보아 부정한 것인 여부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19 판결)

가. 사실관계

본건 임야는 피고인의 조부 임재경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1961. 2. 18. 동인이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의 부 임대현 외 4인이 이를 공동상속 하였다가 1964. 5. 23. 지분매매의 형식을 거쳐 임대현 단독소유로 등기된 다음 1967. 6. 17. 동인이 사망하여 피고인 외 6인 앞으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본건 임야가 피고인 외 6인의 소유라고 믿은 피고인은 1977. 9. 14. 소외 송복준 외 1인과 본건 임야를 동인 등에게 대금 19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과 중도금 70,000,000원을 받고, 잔금은 같은 해 10.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본건 임야의 지가가 폭등하자 풍천임씨 상필공파 종중에서는 임대용, 임기대 등이 주동이 되어 본건 임야는 종중소유로서 피고인의 조부 임재경 외 2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것인데,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위 임대경은 마치 자기 단독소유인양 등기부를 복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77. 10. 3. 임봉만을 종중대표로 선임하여 같은 달 19. 본건 임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같은 달 25.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집행을 하였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위 가처분으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에 차질이 오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봉만에게 위 가처분의 부당성을 이해시키면서 그 신청의 취하를 중용하고 공탁금 및 기타 비용으로 들어간 금원조로 금 2,000,000원을 제공하여 동인이 같은 해 12. 5.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피고인 등 6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위 종중소유인테도 위 임재경 외 2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주장을 깨뜨릴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본건 임야를 그를 포함한 7인의 소유로 알고 이를 타에 매도한 다음, 위 종중에서 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지도 모를 손해를 모면하기 위하여 종중대표인 임봉만에게 위 가처분에 들어간 비용을 금 2,000,000원으로 쳐서 주고,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게 한 행위는 피고인이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원심은 판시하였다.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그 판시 사실인정은 시인되는 바인 즉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것이 없다면 배임증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 이는 그것을 받는 사람으로 보아 부정한 것인 여부에 구애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8. 11. 1, 선고 78도2081 판결 및 1979. 6. 12, 선고 79도708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배임증재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 없다.

5. 평석

가. 대법원 판결과 원심 및 항소심 판결의 비교

(1) 원심 및 항소심 판결의 무죄 이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권의직에게 위와 같은 예금유치를 위한 청탁을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을 본건 배임증재죄로 단죄할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무죄 이유

대법원은 원심 및 항소심과는 달리 형법 제357조 제2항에 규정한 재물 또는 이익의 공여자에게 부정한 것이 없는 한 배임증재죄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이는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 보아 부정한 것인 여부에 구애되지 않음을 전제로, 농업협동조합 단위조합장이던 피고인이 조합을 위하여 예금유치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업무에 속하고 그를 위하여 청탁을 하는 것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없는 바, 형법 제357조 제2항에 규정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것이 없는 한 배임증재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 이는 그것을 받는 사람으로 보아 부정한 것인 여부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1) 배임증재의 구성요건에 대한 오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임증재죄 구성요건에 의하면 “배임수재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에 대비하여 “배임증재자”

가 “배임수재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배임수재자의 업무”를 기준으로 하여 과연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 배임증재자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배임수재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된다면 구성요건의 문언적 해석에 따라 당연히 배임증재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배임증재와 배임수재에 법정형을 달리한 입법 취지에 반함

배임증재죄와 배임수재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바, 만약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배임증재자가 배임증재죄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임수재자의 범행을 교사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공범으로 의율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임증재자가 배임증재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배임수재죄로 처벌될 수 있는 바, 이는 배임증재죄의 법정형을 배임수재죄보다 경하게 정한 입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론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배임수재가 타인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탐하여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범죄이지만, 배임증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것 혹은 배임수재에 가공하였다는 것 정도에 불과하므로 배임수재죄를 가능하게 혹은 수월하게 해 준 조연 범죄로서 2차적으로 논쟁될 정도라는 견해²⁾가 있으나, 실제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일정 금품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견해는 구체적인 배임수증죄의 태양,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추상적인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이승호, “배임수증죄의 본질과 부정한 청탁의 판단기준”, 「법조」 통권 제614호, 2007년 11월호, 112면.

본건 대법원 판결에서 피고인이 논산농지개량조합장직에 있는 동인에게 위 농지개량조합에서 그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수세 등으로 장차 징수하게 될 금 50,000,000원을 자기가 조합장으로 있는 위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장기예치 시켜 달라고 먼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는 등 사안에 비추어 피고인을 동인과 공범으로 의율 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필요적 공범의 법리에 반함

(가) 필요적 공범 일반론

필요적 공범이란 구성요건 자체가 이미 2인 이상의 참가나 단체의 행동을 전제로 성립하는 범죄로 한 사람이 실현할 것을 예상하고 규정한 보통의 구성요건을 수인이 협력 가공하여 실현한 임의적 공범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필요적 공범은 집합범과 대향범으로 나누어지는 바, 집합범은 다수인이 동일한 방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로 소요죄, 내란죄 등이 이에 해당하고, 대향범은 2인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간통죄 등과 같이 쌍방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와 뇌물죄와 증뢰죄, 배임수재죄와 배임수증죄의 경우와 같이 대향자 사이의 법정형이 다른 경우, 범인은닉죄 등과 같이 대향자의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는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하는 형법 총칙의 공범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필요적 공범의 외부에서 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범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수뢰죄와 증뢰죄의 관계와의 비교

현행 형법의 규정에 따른 수뢰죄와 증뢰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수뢰죄와 증뢰죄가 반드시 필요적 공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수뢰죄에 있어 요구죄와 증뢰죄에 있어 공여의 의사표시죄는 필요적 공범이 아니고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수수, 공여 및 약속죄는 모두 필요적 공범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수, 공여 및 약속죄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이 수수, 공여 또는 약속되었다면 필요적 공범인 수수자와 공여자가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로 각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공여자의 뇌물공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뇌물이 공여자에게는 뇌물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뇌물죄 및 증뢰죄와의 관계를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의 관계와 비교해 보면 배임수증죄의 경우 구성요건이 증수뢰죄와 달리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 및 “공여”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증수뢰죄와 같은 요구, 공여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달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양 죄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배임수증죄의 경우 뇌물죄와 달리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뇌물증수뢰죄의 요구, 공여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중 일방만이 미수범으로 처벌되고, 약속을 한 경우에는 쌍방이 함께 처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배임수재죄와 배임수증죄는 필요적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필요적 공범의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다.

6. 관련문제 - 부정한 청탁의 판단 기준 -

배임수재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판단하는 기준은 배임증재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²⁾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³⁾하다.

그런데 판례가 제시하는 부정한 청탁의 판단기준에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다고 실시하고 있어 판례에서 말하는 사회상규가 위법성조각사유인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와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판례에서는 수재자에게 부정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중재자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배임중재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형법이 배임수증죄를 배임죄와 함께 제40장에 규정하고 있으나, 배임죄의 일종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뇌물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학설⁴⁾이며,⁵⁾ 본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에 관한 공정성과 성실성을 보호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으므로 그 보호법익은 그 사무 처리자의 청렴성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형법에서 이를 순수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보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논리적 판단에

2)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등

3)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참조, 이 판결은 배임수재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형법 제130조 소정의 제3자 뇌물교부에 관한 판결이기는 하나, 배임수재의 부정한 청탁을 해석하는데 그 취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4) 박재윤, 「註釋 刑法 V」.

5) 신용석, 「형사판례연구[12]」, 박영사, 234면.

의하여 이해되고 보완적인 가치판단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는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있으나,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의 핵심개념인 “사회상규”와 혼동될 수 있는 동일한 단어를 부정한 청탁의 판단 잣대로 사용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면에서 부정한 청탁의 판단 기준으로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하여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⁶⁾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이를 지지하는 학설⁷⁾의 입장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할 것이며, 그래야만 국가의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IV. 결론

대상 판결이 배임증재죄의 구성요건 중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임무를 배임수재자의 임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임증재자의 경우 증재자로서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배임증재의 구성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뇌물수수죄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뇌물공여죄의 경우 그 범죄 성립 여부를 해당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여부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임증재죄의 경우에도 범죄 성립 여부는 배임수재자의 “임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건 대상판결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위농협에 자금을

6)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3도301 판결.

7) 김일수, 「새로 쓴 형법각론」 제4판, 415면;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401면.

유치해 달라는 청탁은 그 자체로 부정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청탁이 그와 관련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적절하였다고 본다.

(투고일 2008년 10월 17일, 심사일 2008년 10월 28일, 게재확정일 2008년 11월 15일)

주제어 : 배임증재죄, 부정한 청탁, 배임수재죄

[Abstract]

The Standard of ‘illegal solicitation’ in the crime of g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

June-Guil Jeong*

The crime provided in Criminal Law article 357(2)(G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 is the act punished for giving the property or pecuniary advantage to a person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with illegal solicitation concerning his duty. Then, the crime provided in Criminal Law article 357(2) has the constitution factors; ① To a person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② concerning his duty, ③ with illegal solicitation, ④ giving the property or pecuniary advantage. In the target judgement(the Supreme Court, 79do608), however, the judge held that even if there were an illegal solicitation in terms of a person who receives, a person who gives unpunished in case of considering as un-illegal solicitation. That is, if a person was given property or pecuniary advantage does not solicit illegally, the crime provided in Criminal Law article 357(2) is not made up regardless of illegality of solicitation of a person who receives.

However, there is some misconception in the meaning of illegal solicitation. First of all, decision of whether the solicitation is illegal is in principle based on the standard of “duty of a person who receives” So, if a solicitation is illegal in terms of a person who receives, by expressive

* Lee & Ko, Partner Lawyer

definition of the Criminal Law, a person who gives has liability for a crime as he has an illegal solicitation. Secondly, there is a substantial partnership in crime between a person who gives a property and a person who receives. Thirdly, following the second ground, owing to penalty of a person who gives a property can't be more serious than of a person who receives, the target judgement is in discord with the intent of the criminal law article 357.

In addition, the standard of decision of what illegal solicitation in receiving the property or pecuniary advantage is can be equally applied to give the property or pecuniary advantage. Therefore, not requiring malfeasance in duty, it is sufficient to be illegal solicitation concerning duty breaching social normal usages or principle of acting in good faith.

As addressed above, although decision of whether the solicitation is illegal is in principle based on the standard of “duty of a person who receives” the target judgement has misconception in decision of whether solicitation is illegal by holding that there can be un-illegal solicitation in terms of a person who gives. In a sense the crime of giving bribe and receiving bribe has a substantial partnership each other in duty relevance of public official, likewise, the crime g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 has a substantial partnership with the crime rece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 in illegal solicitation concerning duty and should be held in that standard.

Key Words : Breach of Trust, illegal solicitation, bribe by breach of trust